##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5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김상훈·강대식·김위상

김선교 · 김승수 · 김소희

고동진 • 박수영 • 이달희

송언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,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).

법률 제 호

###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"을 "주식회사,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를"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"유한회사인"을 "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(이하 "유한회사등"이라 한다)인"으로, "유한회사로"를 "유한회사등으로"로, "유한회사에"를 "유한회사등에"로 한다.

제10조제4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종전의 다목) 중 "외의"를 "또는 다목 외의"로, "유한회사인"을 "유한회사등인"으로 한다.

다.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책임 회사인 경우: 총사원의 동의로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제23조제2항 단서 중 "유한회사의"를 "유한회사등의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중 유한책임회

사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회사"란 제4조제1항에 따른	1
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<u>주식</u>	
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.	주식회사, 유한회사 및 유한
	<u>책임회사를</u>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외부감사의 대상) ① 다음	제4조(외부감사의 대상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	
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	
사인(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	
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	
다. 이하 같다)에 의한 회계감	
사를 받아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	3
자산, 부채, 종업원수 또는 매	
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기준에 해당하는 회사. 다만,	
해당 회사가 <u>유한회사인</u> 경우	유한회사 또
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	는 유한책임회사(이하 "유한
수,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	회사등"이라 한다)인

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10조(감사인의 선임) ① ~ ③ ㅈ (생 략)
  -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 으로 선임하여야 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그 밖의 회사: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바에 따라 선정한다.

가.•나. (생 략)

<신 설>

<u>다.</u> 나목 <u>외의</u> 감사가 없는

<u>유한회사등으로</u>
유한회사등에
4
 1. (현행과 같음) 2
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u>다.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</u>
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의 유한책임회사인 경우: 총사원의 동의로 선정한
<u>회계법인 또는 감사반</u> 라또는 다목 외의

유한회사인 경우: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 사반

- ⑤ ~ ⑨ (생 략) 제23조(감사보고서의 제출 등) ① 7 (생 략)
  -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 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 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, 이해 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 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 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 - ③ ~ ⑦ (생 략)

<u>유한회사등인</u>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감사보고서의 제출 등) ①
(현행과 같음)
②
유한
· <u>개도</u> 회사등의
<u> </u>
③ ~ ⑦ (현행과 같음)